
SUWONMESSE 공사 안전매뉴얼

2025. 9.

SUWONMESSE

SUWONMESSE 공사 안전 매뉴얼

제1절 총 칙

제1조 목 적

본 매뉴얼은 수원메세 전시장 조성 시 유의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지침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시장 조성/시공 운영 및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현장상주책임자

- ① 현장상주책임자란 전시장 내 행사기간 중(임대개시일~철거일)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하며, 모든 수원메세 지정등록업체는 전시장 내 작업기간 현장상주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특히, 법령상 유자격자 시공이 요구되는 작업을 담당하는 지정등록업체는 현장상주책임자의 상주 운용을 의무로한다. (2025.09 개정)
 1. 마킹일 또는 임대개시일 이전 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작업에 대한 처리 권한과 책임을 진다. (2025.06 개정)
 2. 작업기간 내 현장상주책임자의 변경이 필요할 시, 아래 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이면서, 시공 시작 전 홀매니저에게 사전 전달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 (2025.08 개정)
- ② 현장상주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등록업체 분야별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 1년 이상의 정규직 직원
 2.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소속사의 4대보험 가입자
 3. 작업신고서 상에 신고된 자

제3조 현장상주책임자의 책임과 의무

- ① 전시장 내 공사를 위한 모든 서류작성 및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공사현장을 총괄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 ③ 작업자가 현장 내에서 수원메세의 운영규정, 안전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 ④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통로에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⑤ 부스 철거 후 원상복구 이상 유무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 ⑥ 현장상주책임자는 전시 준비부터 철거기간 동안 현장 상황 발생 시 홀매니저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일반사항

- ① 공사현장 내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② 2.5m 이상 높이의 시설물 시공 시에는 반드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③ 공사신고와 동일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최자 및 홀매니저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2025. 06 개정) 승인을 득한다.
- ④ 구조상 안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물로 시공하여야 한다.
- ⑤ 각 연결부위는 각기 최대한 안전하게 체결하도록 한다.
- ⑥ 수원메쎄 내부에서는 일체 흡연을 할 수 없다.

제5조 분야별 작업신고

- ① 작업신고는 이메일을 통한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신고 완료 후 작업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2025. 08 개정) 기술지원신청서, 배치도 등을 (2025. 08 개정) 출력하여 설치 첫날 오전 중으로 제출하고 공사현황표를 작성한 뒤 해당부스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작업신고는 시공업체 명의로 임대개시일 7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수주 지연에 따른 신고 지연은 수원메쎄에서 발주처 확인을 통하여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확인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2025. 07 개정)
- ③ 분야별 작업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 통	· 현장 상주 책임자를 포함한 4대보험 가입증명원 (2025.07 개정) · 작업신고서	
전시디자인	· 배치도 · 시안 · 방염필증 또는 방염시험성적서 (목공부스, 암실, 무대 등 가연성 자재 시공 시) (2025. 08 개정) - 독립부스인 경우 협력업체신고서 · 공사현황표	공사현황표는 출력하여 현장부스에 부착
전 기	· 기술지원신청서 · 공사자격증 · 전기도면 · 독립부스 경우, 조명기구 배치도	
카펫/파이텍스	· 배치도 · 방염필증	
방 염	· 배치도(방염처리대상 및 방법 명시) · 방염필증 또는 방염시험성적서 (2025. 08 개정)	
가구비품임대	-	
리 강	· 구조검토내역서(구조계산서)	2025.08 삭제
광고시설물	· 광고안내시설물 설치(변경)신청서 · 설치시방서(사양, 배치도, 시공방법 등 계획서)	
경비 및 인력용역	· 경비원명단 신고서 · 경비계획서 및 근무일정표	
급배수/압축공기	· 기술지원서비스평면도 또는 급배수도면(2025.08 개정)	
지 게 차	· 위험물·전시품반입(반출)신청서 ※필요시(2025.08 개정) · 중량물반입신청서 ※필요시	
철 거	· 철거 작업 위치가 표기된 부수도면 및 철거계획 (2025.08 개정)	
구조해석	· 구조계산서 및 구조계산 확인서	

제6조 승인절차

- ① 수원메세는 시공업체가 제출한 공사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설치 승인, 변경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다.
- ② 수원메세로부터 공사신고 내용에 대한(2025.06 개정)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나 변경하고자 하는 시공업체는 변경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수원메세의(2025.06 개정)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원메세가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이나 조건부 승인을 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변경 또는 시정 조치 없이 시공된 부스에 대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2025.08 개정)

제2절 분야별 공사 안전관리

제7조 전시디자인 분야

- ① 전시 시설물 설치 시, 그 높이는 5m를 넘을 수 없다. (구조계산을 수행한 시설물은 예외) (2025.08 개정)
- ② 전시 전 구간의 통로 폭은 반드시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통로는 출입구 및 비상구와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비상사태(화재 등)에 대비하여 적법한 비상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④ 통로에는 긴급 피난 시 방해가 되는 설비 또는 전시품을 방치할 수 없다.
- ⑤ 비상구, 기계실, EPS실(2025.06 개정), 창고 출입구, 하역장 출입문, 소화전 BOX 및 화장실 입구 부근에는 전시 부스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⑥ 전시부스 설치 시에는 기존 시설물 벽면이나 이동식 파티션에서 70cm 이상 떨어지게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에는 어떠한 장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 ⑦ 전시장 바닥 또는 벽면에 천공을 하거나 본드, 못 등을 사용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도색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 내에서 톱질, 유성·미방염(2025.08 개정)페인트, 스프레이류, 유해성 물질(2025.08 개정)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한다.
- ⑧ 전시부스 및 바닥 마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는 방염 또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⑨ 기타 소방법에서 정한 제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 시공하여야 한다.
- ⑩ 유리로 부스 시공 시 국가가 인정하는 안전 테스트를 받은 강화유리 및 접합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⑪ 전시장 내에서는 컴프레서, 전기톱, 전기 대패, 전기 그라인더 등 전동 작업 공구는 사용할 수 없다.
- ⑫ 복층부스 설치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구조 계산서를 임대 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행사 시작 전에 현장 감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복층 면적이 전시부스 구조물 바닥면적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3. 전시부스 복층 벽면은 2면 이상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4. 복층 계단의 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복층 내부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6. 천장 부분이 마감되는 경우에는 천장에 10㎡당 1개 이상의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7. 복층 출입구는 넓이 0.9m 이상으로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입구 앞 상단에는 충전식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안전 관리 요원은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 ⑬ 전열기구 사용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열기구 작동 시 표면 온도 70℃ 이상인 때에는 안전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시 작동용 전열 기구는 목재로 된 진열대에 설치할 수 없으며 바닥으로부터 20cm 이상 높이에 불연성 진열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전기 취사구, 다리미 등 전열기용 제품 등에 인접한 벽면은 불연성 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
 4. 전열기구 사용 전시부스는 카펫이나 파이텍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⑭ 전시디자인 설치업체는 전시장 개문과 동시에 시공부스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안전 및 행사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참가업체 및 관람객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2025.06 개정)

제8조 전기 분야

- ① 전시장 조성 시,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공사는 지정된 수원메세 지정협력업체의 유자격자만이 시공 가능하다.
1. 국부조명전력은 1㎡당 3상4선식 380/220볼트는 350W, 3상3선식 220볼트 전용은 100W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개소의 전기 수급 지점에 분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선공사는 600볼트 TFRCV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600볼트 IV전선이나 PVC코드는 사용할 수 없다.
 3. 주전원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 각 분기회로별 차단기는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하여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원 연결 콘센트는 바닥에서 30c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성격 또는 행사 시설의 특성상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 수원메세의 승인을 득한 후, 방문객 안전에 유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전시품 작동용과 국부 조명용 스위치는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24시간 전기 공급이 필요한 개소의 스위치가 있는 경우 이 또한 분리 설치한다. (2025. 06 개정)
 6. 전시품 작동용 모터 및 기기에는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모든 전기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전기사업법, 전기공사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기준, 규칙, 내선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8. 전기 사용은 수원메세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9. 전시주최자가 전시장 내에서 발전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원메세의 사전 승인을 받고, 서비스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선로 공사 등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전시주최자는 위 서비스 협력업체 소속의 전문 요원을 전시 기간 동안 전시장에 상주시켜 위 전문 요원으로 하여금 매시간 발전기 및 관련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한 뒤, 이를 매일 수원메세에게 보고해야 한다. 발전차의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하여 수원메세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는 전시주최자가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10. 배선 또는 분전반(2025.08 개정)이 통로 등 관람객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반드시 걸림 방지턱 및 안전표시 테이프를 설치해야 하며, 배선 노출 마감은 고무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옥외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은 모두 방수용으로 하여야 한다.
 12. 전기 공급 후 홀 내부 차량 입차는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차량 입차 시 전기 협력업체는 차량 이동 구역에 설치된 전기 관련 시설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홀매니저에게 보고 후 진행한다. (2025. 06 개정)
 13. 분전반은 밀폐된 장소를 피하여 설치한다 (2025. 08 개정)
 14. 트렌치 하단 배전함 내부의 멀티탭에 콘센트를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2025. 08 신설)
- ② 전기 공급은 수원메세의 안전점검을 득한 후에 시행한다.
- ③ 전시행사 종료 시 전시동력 차단 전에는 일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철거공사 종료 후 트렌치(철판)와 트렌치 마개(2025. 06 개정) 및 분전함 정리 / 배전함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카펫/파이텍스 분야

- ① 카펫/파이텍스 시공으로 인하여 들뜸이나 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 ② 카펫/파이텍스는 선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바닥 시공 시에는 잔여물이 남지 않는 마스킹 테이프(2025. 06 개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③ 2항 이외의 테이프는 전시장 바닥이 아닌 카펫/파이텍스 위에 접착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2025. 08 개정)
- ④ 시공 후, 접착 상태를 확인한다. 들뜸이나 밀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시공한 카펫/파이텍스 및 고정용 테이프(2025. 06 개정)은 임대기간 내 철거하고 외부로 반출한다.

제8조 가구비품임대 분야

- ① 수원메세 전시장/컨퍼런스룸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필요한 비품은, 설치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임대비품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복원하거나 교체를 하여야 한다.
- ③ 행사종료 후 임대한 비품은 임대기간 내 수원메세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내 반출되지 않은 비품에 대한 손실 및 그 비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비품 임대업체에게 있다. (2025.06 개정)
- ④ 가구·비품 사용 목적으로 신나, 락카 등의 전시장 내부 반입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전시장 외부 하역장에서 사용한다.
- ⑤ 임대 물품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여 작업 및 행사 간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제9조 광고시설물 분야

- ① 광고물은 설치기준 및 설치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종 류	규격	설치수량	세부위치
로 비	뽕빠레	600×1,500	12	로비내부
	측면배너	2,900×1,220(좌) 2,870×1,220(우)	2	로비 측면 상부 (좌, 우)
HALL 1	입구배너	9,950×940	1	전시홀 입구 상부 벽면
	기둥배너	800×4,600(전,후) 810×4,600(좌,우)	6	전시장 내부
HALL 2	입구배너	9940×940	1	전시홀 입구 상부 벽면
	기둥배너	800×4,600(전,후) 810×4,600(좌,우)	6	전시장 내부
옥외	전면현수막	36,000×9,000	1	분할가능
	측면 현수막(좌)	35,000×9,000	1	분할가능
	측면 현수막(우)	20,000×9,000	1	분할가능
	가로등 배너	600×1,800	11	외부 주차장

- ② 광고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광고안내시설물 설치신청서」 및 설치시방서를 전시장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수원메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원메세 전시장 구역을 제외한 다른 KCC복합단지 구역(수원역 지하 연결통로, 홈씨씨인테리어) 내 광고시설물 설치 는 금지한다. (2025.08 개정)
- ③ 현수막 설치 차량은 홀매니저의 승인을 득한 후 일정을 조율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 ④ 현수막 고정용 로프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끝 부분을 깨끗이 처리하고 기존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 후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⑤ 광고물은 반드시 행사 종료 일자에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잔여물에 대한 처리는 광고현수 막 설치 업체가 담당한다. (2025.06 개정)
- ⑥ 광고시설물은 비상구, 안전표지, CCTV(2025.08 개정) 등을 가리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⑦ 외부에 설치된 광고시설물은 태풍 등의 기상이변에 예견되는 경우 수원메세의 요청에 의하 여 즉시 철거 또는 이전되어야 한다.
- ⑧ 홀 내부에 설치되는 현수막 또는 사인물은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에 관련된 구조물 위에 설 치될 수 없다. (2025.06 개정)
- ⑨ 설치된 현수막 또는 사인물이 훼손된 경우 즉각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 (2025.06 개정)

제10조 경비 및 인력용역 분야

- ① 설치, 철거를 제외한 행사기간 중에는 경비지도사 1인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경비지도 사는 홀 담당 배치되는 의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경비인원 투입 7일전 경비원명단 신고서, 경비계획서 및 근무 일정표,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협력업체 공통 제출 서류(2025. 07 개정)를 수원메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매일 특이사항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일일 행사종료 후 전시홀 내부 및 각 사무실의 화재예방 점검을 하고, 주최자 퇴실 확인 후 철수한다. 단 주최자 잔업으로 퇴실이 불가능 할 시에는 주최자 및 홀매니저에 보고 후 철수하여야 한다.
- ⑤ 경비요원 투입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선조치 후 즉시 수원메세/주최자 측에 보고한다.
- ⑥ 투입인력 및 배치 요령은 다음과 같다.

(단위: 명)

구분	규모	경비인원			
		입구(로비)	내부순찰	화물출입구	계
장치 및 철거기간	4,650㎡이하	1	1	1	3
	9,080㎡이하	1	2	1	4
전시행사 기간	4,650㎡이하	1	2	1	4
	9,080㎡이하	2	2	1	5

* 마킹일 진행 시, 1개 홀 당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마킹일에 마킹 이외 부스 설치 또는 추가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수원메세는 주최 측에 추가 인원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25.08 신설)

- ⑦ 행사준비기간 경비인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장 내·외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시행
 2.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나 행동 즉시 통제
 3. 수원메세 제규정에서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는 물품이나 장비 통제
 4. 시설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 홀매니저 통보
 5. 하역장 차량 출입 운영/통제 및 서터 파손 예방
 6. 행사종료 후 전시장 내 조명 소등과 출입문 잠금 상태 확인
- ⑧ 전시기간 중 경비인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사장 내 위해·위험요소 존재여부 확인 및 수시 점검
 2. 행사장 출입인원 통제 및 확인
 3. 단정한 복장과 친절한 서비스 매너로 내방객 및 관람객 질서유지 및 안내
- ⑨ 철거기간 중 경비인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에서의 위험 행위 즉시 통제
 2. 폐기물이 전시장 내외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3. 전시품 반출 및 장치물 철거 시 출입자 통제 철저
 4. 반출차량의 원활한 흐름 유도
 5. 철거 완료 후 전시장 시설의 모든 출입구 폐문 및 소등 후 수원메세 보고 (2025.06 개정)

제11조 급배수/압축공기 분야

- ① 급배수 및 압축공기 배관 공사 전 수원메세의 기존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시공한다.

- ② 배관공사 완료 후 이상 유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③ 배관은 흔들리지 않도록 케이블 보호대 등으로 고정한다.
- ④ 급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모든 장비의 배수관은 반드시 장비와 1:1로 체결하여야 하며, 배수 라인 중간 "T관" 이음 공사는 일체 금지한다.
- ⑤ 누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일 행사 종료 후 사용설비의 이상 유무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⑥ 배관이 통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통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주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 ⑦ 행사 종료 후 시공한 배관 등은 임대기간 내 철거하여 수원메세 외부로 반출 하여야 한다.
- ⑧ 배관이 통로 등 관람객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반드시 걸림 방지턱 및 안전표시 테이프를 설치해야 하며, 배관 노출 마감은 고무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025. 08 신설)
- ⑨ 배관 설치 가능한 한 전기 간선 설치 구역과의 충분한 이격을 두고 실시하며, 부득이하게 배관이 콘센트, 작업된 간선, 분전함 등 전기 설비 또는 제품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누수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2025. 08 신설)
- ⑩ 배관 해체 작업 후, 트렌치 커버는 원상복구 한다. (2025. 08 신설)

제12조 지게차 분야

- ① 전시물품의 반입, 반출을 위하여 지게차를 운용하는 업체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원메세 홀매니저에게 작업 신고서와 함께 작업 예정인 지게차 목록을 제출한다. (2025.06 개정)
- ② 전시장 내 **2톤/m²이상** 물품 반입 시, 「중량물반입신청서」 작성 후 홀 매니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 ③ 전시홀 내 진입하는 모든 지게차는 상시 정비하여 최소의 매연도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지게차 운전자는 안전을 위하여 전시홀 내, 외부에서 서행(10km/h 이하, 2025.07 개정) 운행하여야 한다.
- ⑤ 전시홀 내에서는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 조작, 급선회 등을 할 수 없다.
- ⑥ 전시홀 내 및 하역장을 주행할 때에는 포크의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 작업자가 식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화물적재 상태에서 30cm이상으로 들어 올리거나 마스트를 수직으로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주행할 수 없다.
- ⑧ 포크 또는 파렛트, 스키드, 균형추 등에 사람을 태우고 주행할 수 없다.
- ⑨ 시야가 방해되는 작업 또는 중량물 반입, 반출 시 유도자 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025.06 신설)
- ⑩ 트렌치 상부에 지게차를 정차한 상태로 상·하차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작업 전 수원메세 홀매니저의 현장 확인을 득한다. (2025. 08 신설)

제13조 철거 분야

- ① 철거업체는 행사 철거 전일까지 신고를 반드시 하여 홀매니저에게 승인받아야한다.
- ② 철거공사 관계자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③ 작업 전 반드시 압축공기, 급수, 전기 등이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④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작업한다.

- ⑤ 철거공사 중 수원메세 시설 파손 시, 홀매니저에 즉시 보고하고 지정 기일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한다.
- ⑥ 철거공사 후, 잔재물은 장치업체와 관계된 업체 공동 책임하에 처리토록 한다.
- ⑦ 유리는 원상 보존하여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⑧ 철거된 폐기물은 임대기간 내 수원메세 외부로 반출되어야 하며, 관련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14조 구조해석 분야

- ① 구조해석은 중량물 트러스 리깅(수원메세 전시장 천정 리깅 불가) (2025. 07 개정), 과중량품 반입(2톤/㎡초과), 전시장치 제한높이 초과(5m), 복층구조물 설치, 독립부스제작 등 전시장 조성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수원메세의 지정등록업체를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받아야 한다.
- ② 구조해석 업체는 임대개시일 7일전까지 구조계산서를 수원메세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5. 07 개정)

제2절 안전관리 및 제재기준

제15조 공통적용기준

- ① 지정등록업체가 「수원메세 운영규정」, 「컨퍼런스룸 운영규정」, 및 본 매뉴얼을 위반한 경우, 「수원메세 등록업체 계약서」 제 13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 ② 현장상주책임자만 상주하고, 공사의 전부를 비등록업체가 진행하는 경우 또는 명의 도용에 관한 민원이나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필요 관련서류 첨부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홀매니저와 협의 없이 자재반입 및 적재, 공사 반출, 철거 등을 할 수 없다.
- ④ 현장상주책임자는 수원메세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작업자에게 수원메세의 관련 지침을 숙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6조 안전관리 위반 제재의 종류와 기준

- ① 확인서 (별점 1~2)
 1. 수원메세 운영규정, 컨퍼런스룸 운영규정, 본 매뉴얼 위반한 경우
- ② 경 고 (별점 3)
 1. 확인서 처분으로 인한 누적점수 3점
 2. 홀매니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시공 또는 위반사항 미 시정 시
 3. 경미한 안전사고발생(경상, 시설물 파손포함 등)
- ③ 출입정지 (별점 4)
 1. 확인서 처분으로 인한 누적 점수 4점
 2.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안전 사고발생(중상, 시설물 파손포함 등)
 3. (6개월 간 해당 협력업체 수원메세 작업 불가 처리.)
- ④ 등록제한 (별점 5)
 1. 누적 위반점수 5점
 2. 등록업체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3. 등록제한 처분 확정일로부터 잔여 계약기간 해지 및 다음 해 수원메세 등록 제한
- ⑤ 등록취소
 1. 명의대여로 적발된 경우 즉시 등록 취소, 향후 3년간 수원메세 등록 제한

제17조 처리방안

- ① 확인서: 사전 예고 후 홀 매니저 발급
- ② 경 고: 실무위원회(실무자, 단장)에서 사안검토 후, 처분 결정 및 공문 통보
- ③ 출입정지, 등록제한: 심사위원회(실무자, 단장, 대표)에서 사안검토 후, 처분 결정 및 공문 통보

붙임 1. 안전관리 위반사항 확인서

붙임 2.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

안전관리 위반사항 확인서

업체정보	업체명		대표자	
	주 소			
	현장책임자		생년월일	
	연락처			
행 사 명				
위반업종		벌점	점	
내 용				

위와 같이 안전관리 위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벌점을 수락합니다.

년 월 일

현장책임자: (서명 또는 인)

수원메세: (서명 또는 인)

- 평가기준
- ① 확인서 (벌점 1~2)

1. 수원메세 운영규정, 컨퍼런스룸 운영규정, 본 매뉴얼 위반한 경우
- ② 경 고 (벌점 3)

1. 확인서 처분으로 인한 누적점수 3점

2. 홀 매니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시공 또는 위반사항 미 시정 시

3. 경미한 안전사고발생(경상, 시설물 파손포함 등)
- ③ 출입정지 (6개월) (벌점 4)

1. 확인서 처분으로 인한 누적 점수 4점

2.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안전 사고발생(중상, 시설물 파손포함 등)
- ④ 등록제한 (벌점 5)

1. 누적 위반점수 5점

2. 등록업체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3. 등록제한 처분 확정일로부터 잔여 계약기간 해지 및 다음 해 수원메세 등록 제한
- ⑤ 등록취소

1. 명의대여로 적발된 경우 즉시 등록 취소, 향후 3년간 수원메세 등록 제한
- 처리방안
- ① 확인서: 사전 예고 후 홀매니저 발급

② 경 고 실무위원회(실무자, 단장)에서 사안검토 후, 처분 결정 및 공문 통보

③ 출입정지: 심사위원회(실무자, 단장, 대표)에서 사안검토 후, 처분 결정 및 공문 통보

붙임2.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전시디자인설치)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점수
1	사다리, 리프트카 등 고소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확인서	1
2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바닥, 벽면, 천정, 기둥 등 훼손)	확인서	1
3	바닥 미 보양, 흡진 설비 등 안전조치 없이 파티, 연마(사포) 작업	확인서	1
4	소방시설 관련 법규 위반(소화전 폐쇄, 확산 소화기 미설치)	확인서	1
5	작업신고서, 부스도면 미제출(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
6	전시장 내 허가 없이 전동기구(전기톱, 그라인더) 사용	확인서	2
7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폐기물) 방치	확인서	1
8	오픈(준공) 청소 미시행(하역장으로 배출 미시행)	확인서	1
9	자재 불법 적치(전시장 통로, 화물 하역장 등)	확인서	1
10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11	안전교육 미참석	확인서	1
12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서 미제출 (복층, 5m 이상 무대 등)	확인서	2
13	비방염 자재 시공	확인서	2
14	기한 내 부스 미철거	확인서	1
15	신나, 유성페인트 등 위험물 반입, 토치, 용접작업 등 전시장 내 위험물을 수반한 작업 시행	확인서	2
16	장치물 부스 높이 제한 미준수 (수원메세규정, 주최자규정)	확인서	1
17	전시장 내 흡연	경고	3
18	동일 위반사항(확인서 작성 후) 계속 시행	경고	3
19	전시장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차기 행사 등 중대한 영향 초래	출입정지 ~ 등록제한	4~5
20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21	전기공사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 사고 발생	확인서	1
22	부스공사 미 완료(공사 중단)로 인한 참가업체 행사 지장 초래	경고	3
23	등록업체 과실로 인한 전시구조물 붕괴,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발생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	출입정지 ~ 등록제한	4~5
24	명의대여	등록취소	3년간 등록제한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전기시설)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점수
1	임대 개시일(마킹일 간선 작업 시 마킹일)~종료일 작업 및 행사 진행 간 현장 담당자 미상주	확인서	1
2	작업신고서, 전기도면 미제출 시공 (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
3	사다리, 리프트카 등 고소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확인서	1
4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확인서	1
5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6	트렌치 마개 원상복구 미시행	확인서	1
7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8	간선 시공 후 간선 마감 미흡	확인서	1
9	행사 종료 후 간선 해체, 수거 미 실시	확인서	2
10	부스 전기 작업 간 파손된 조명(램프) 방치	확인서	1
11	안전교육 미참석	확인서	1
12	전시장 내 흡연	경고	3
13	자재 불법 적치(전시장 통로, 화물 하역장 등)	확인서	1
14	동일 위반사항(확인서 작성 후) 계속 시행	경고	3
15	시공 불량으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불꽃 및 연기 발생)	경고	3
16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인적·물적 중대한 피해 발생)	출입정지 ~ 등록제한	4~5
17	명의대여	등록취소	3년간 등록제한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카펫/파이텍스)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점수
1	라텍스 본드 등 접착제 사용	확인서	1
2	작업신고서 미제출 시공(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
3	승인되지 않은 테이프로 전시장 및 로비 바닥 접착 시공	확인서	1
4	접착제가 붙어있는 제품으로 전시장 또는 로비 시공	확인서	1
5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확인서	1
6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7	공사 잔재물(카펫/파이텍스, 마스킹 테이프) 미수거	확인서	1
8	자재 불법 적치(전시장 통로, 화물 하역장 등)	확인서	1
9	안전교육 미참석	확인서	1
10	동일 위반사항(확인서 작성 후) 계속 시행	경고	3
11	전시장 내 흡연	경고	3
12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13	비 방염 제품 시공	경고	3
14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수원메세 시설물 파손,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출입정지 ~ 등록제한	4~5
15	명의대여	등록취소	3년간 등록제한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급배수)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점수
1	임대 개시일~종료일 작업 및 행사 진행 간 현장 담당자 미상주	확인서	1
2	작업신고서, 급배수 도면 미제출 시공 (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
3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확인서	1
4	트렌치 마개 원상복구 미시행	확인서	1
5	행사 종료 후 급배수 배관 미회수	확인서	1
6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7	안전교육 미참석	확인서	1
8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9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누수 사고 발생	확인서	2
10	전시장 내 흡연	경고	3
11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누수로 인한 타 행사 피해 발생)	출입정지 ~ 등록제한	4~5
12	명의대여	등록취소	3년간 등록제한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경비)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 점수
1	근무자 복장 · 태도 불량, 업무 태만	확인서	1
2	적정 인원 미배치(본 매뉴얼 제10조 6항 참고)	확인서	1
3	사고 발생 미보고	확인서	1
4	공사 안전 매뉴얼 및 운영규정 미이행 등 작업자 위반 사항 미보고 및 방치	확인서	1
5	근무자의 과실로 인한 민원 발생	확인서	1
6	설치 · 행사 · 철거 종료 후 전시장 시건 미흡	확인서	1
7	작업신고서 미제출 (임대시작일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
8	행사 진행 기간 경비지도사 미상주	확인서	1
9	전시장 임의 개방	확인서	2
10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누수로 인한 타 행사 피해 발생)	출입정지 ~ 등록제한	4~5
11	명의대여	등록취소	3년간 등록제한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광고사인물)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 점수
1	리프트카 등 고소부위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확인서	1
2	작업신고서 미제출 시공(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
3	뽀빠레 배너 등 고소부위 작업 시 사다리 이용하여 시공	확인서	1
4	안전교육 미참석	확인서	1
5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6	전시장 내 흡연	경고	3
7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확인서	1
8	행사 종료 후 미철거	확인서	2
9	지정 장소 외 시공	확인서	1
10	동일 위반사항(확인서 작성 후) 계속 시행	경고	3
11	광장 가로등 별도 거치대 시공 시 가로등 미보양	확인서	1
12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13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수원메세 시설물 파손,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출입정지 ~ 등록제한	4~5
14	명의대여	등록취소	3년간 등록제한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표(가구비품)

NO	위반내용	처리	위반 점수
1	안전교육 미 참석	확인서	1
2	행사 종료 후 가구비품 미수거(폐자재 포함)	확인서	1
3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확인서	1
4	자재 불법 적치(전시장 통로, 화물 하역장 등)	확인서	1
5	행사 설치일 주최자 지정 시간 전에 행사장 입실, 작업 진행	확인서	1
6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확인서	2
7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은 전시장 내·외부 자재 보관	확인서	1
8	소화전, 비상구 개폐 범위 내 가구비품 설치	확인서	1
9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수원메세 시설물 파손,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출입정지 ~ 등록제한	4~5
10	명의대여	등록취소	3년간 등록제한